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487호 2020. 1. 13(월)

## 차 례

### 훈 령

-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----- 1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호 소하천 점용허가 고시 ----- 14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 
고시 ----- 15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17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----- 22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
입법예고 ----- 23

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

2020년 1월 13일

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53호

###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건관리 규정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·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속 사업장(이하 “사업장”이라 한다)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.

② 이 규정이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관련 법령, 취업규칙, 단체협약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·같은 법 시행령·같은 법 시행규칙·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안전보건업무 우선)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·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준수 의무) 사용자 및 근로자는 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,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##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

제6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 안전보건관리책임자(이하 “관리책임자”라 한다)는 구청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·관리한다.

1.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근로자의 안전·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4.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5.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6.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
7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8. 안전·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

제7조(관리감독자)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(이하 “관리감독자”라 한다)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소관 분야의 관리감독자가 지휘·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2. 소관 분야의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 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·사용에 관한 교육·지도
3. 소관 분야의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4. 소관 분야의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·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·감독
5.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자(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) 및 보건관리자(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)의 지도·조언에 대한 협조
6. 소관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

7.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

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8조(안전관리자)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업무 및 관계 법령이나 이 규정이 정하는 업무
2.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
3.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
4.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
5. 안전사고의 조사, 원인분석, 예방책의 강구,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사례의 취합
6. 안전점검,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
7.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
8. 지휘·감독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9. 근로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·사용에 관한 교육·지도
10.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
11.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·정돈
12.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·조언에 대한 협조
13.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제9조(보건관리자) ① 관리책임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업무 및 관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
2.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
3.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
4.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
5.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보건에 관한 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
6. 그 밖의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

###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심의·의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.

## 1. 근로자위원

가.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)

나.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

## 2. 사용자위원

가. 사용자대표

나. 대표자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

다. 안전관리자(안전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) 1명

라. 보건관리자(보건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) 1명

③ 근로자대표, 사용자대표,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·정확하게 알려야 한다.

제12조(위원의 신분 및 임기)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

③ 위원의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드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.

④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⑤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단, 근로자가 소속된 각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근로자는 연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3조(심의·의결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근로자의 안전·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4.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5.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6.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7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8. 안전·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·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

제14조(회의록 작성·비치)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개최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
3. 회의내용, 심의·의결 사항
4. 그 밖의 토의 사항

#### 제4장 안전보건교육

제15조(교육계획 수립) 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.

제16조(안전보건교육)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.

1. 정기교육
2. 신규채용 시 교육
3.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
4.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

② 교육시기,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제17조(교육실시 방법) ①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필요 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제5장 안전관리

제18조(안전관리기본계획) 관리책임자는 매년 초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.

제19조(위험성평가 실시) ① 관리책임자는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(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)하고 개선대책을 세워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·위험요인
2. 위험성 결정의 내용
3.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

③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0조(기계·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)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
2.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
3. 회전기계의 물림점(롤러·기어 등)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

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,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21조(작업중지)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으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·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.

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,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작업 중지조치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,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.

④ 모든 직원은 작업 중지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2조(안전수칙)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작성·게시하여야 한다.

② 근무자는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(안전표지)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·위험한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, 지시, 안내, 금지 등의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
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, 형태, 용도, 사용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24조(안전기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다.

## 제6장 보건관리

제25조(작업환경측정) ① 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책임자는 전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,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·설비의 설치·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6조(근로자 건강진단)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·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.

② 건강진단의 종류·시기·주기·항목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제27조(근골격계질환예방) ① 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(반복작업, 부적절한 작업자세, 무리한 힘의 사용 등)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세우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,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.

제28조(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) 관리책임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, 정신분열증·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자, 심장·신장·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.

###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

제29조(재해발생 시 긴급조치)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,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사고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30조(사고조사 및 보고) ①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,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, 관계기관에 알리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.

④ 사고조사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를 한 달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. 단,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1조(재해분석 및 대책) ① 관리책임자는 매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 현황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운다.

② 재해분석결과 및 개선대책은 각 부서에 알려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.

## 제8장 보칙

제32조(무재해 운동)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33조(문서기록 보존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34조(규정 외 사항)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과 관련 법령,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16. 9. 8.>

## 소하천 점용허가 고시

고시 제 2020 - 9호

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「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·사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월 6일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현대건설주식회사		
	대표자 (성 명)	박동욱	주소	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***
소하천명		매 천		
공사 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509-5		
	면적	500m <sup>2</sup>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- m <sup>2</sup>
	기간	2020. 1. 1. ~ 2020. 4. 30.		
	목적 및 사유	차도교 기초 시공을 위한 고압분사그라우팅 작업		

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0-11호

##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녹지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(도시개발과, 032)560-4762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0. 1. 13.  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(녹지)의 변경에 관한 계획

### 2. 위 치: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-21번지 일원

### 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- 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 경	녹지	경관녹지	서구 원창동 213-21번지 일원	1,590	증) 14	1,604	2016.11.07 (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-263)	경미한 변경

## ○ 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(변경) 사유서

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녹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면적 증가</li> <li>- 1,590㎡ → 1,604㎡</li> <li>증) 14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도시계획시설 토지분할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정정을 통하여 녹지의 유지관리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</li> </ul>

## 4. 지형도면: 게재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○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/>)에서 열람 가능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0-12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18조제2항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22조제5항, 제23조 제4항, 제24조제1항,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01. 13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변경·폐지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원당대로 499 외 5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·폐지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람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0.01.1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9-01-13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64-81, 164-101	인천광역시 서구 권당대로 499 (왕길동)	20081231	으뜸이 되는 담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	
2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신85-23	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42번길 46 (마전동)	20081231	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3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0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5번길 4 (마전동)	20081231	마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마전지구 4블럭 1로
4	인천광역시 서구 집암동 253-23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450번길 17-7 (집암동)	20081231	서곶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,5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5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-43	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32번길 34 (원창동)	20131202	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 3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치

고시일 : 2019-01-13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	도로명주소 변경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
	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		
1	원창동 379-18	인천광역시 서구 중동대로393번길 26 (원창동)	인천광역시 서구 중동대로393번길 26 (원창동)	소유자 신청	20090706	중동대로의 시청지점에서부터 약 3.9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	원창동 379-1		인천광역시 서구 중동대로393번길 16 (원창동)			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-13호

##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
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9블록의 주택건설사업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에 대하여 『주택법』 제15조(사업계획의 승인)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1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업명 :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9블록 공동주택 신축
2. 사업주체 : 우미건설(주) (대표자 이석준)  
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14, 2층 우미건설(주)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 - 가.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9블록
  - 나. 대지면적 : 31,541㎡
  - 다. 사업규모 : 연면적 102,900.0027㎡ (지하2층, 지상29층)
  - 라. 용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8개동 765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·복리시설
  - 마. 사업비 : 269,794,000천원
4. 사업기간 : 2020. 02. 20. ~ 2022. 09. 20.
5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  -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- 59호

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. 1. 1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 외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사업계획, 급여제공 이력,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지속성을 향상시키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,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기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정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-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(안 제10조)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노인복지과장)에게 2020. 1. 29.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 ※ 의견제출처

- 주 소 : (우22726)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)  
인천광역시 서구청 노인복지과
- 전화번호 : 032-560-4564 (FAX 560-2741)

## 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(안)